김해시복지재단

임대아파트 주민복지 상호협력
협 약 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주택관리공단 구산주공아파트1단지관리소(이하 '양 기관' 이라한다)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구산주공아파트1단지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범위)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주민복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를 위한 세부 실행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
1.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보공유 및 주거서비스 지원
2. 입주민의 문화공연 및 주민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행사 지원
3. 긴급 생계곤란세대 지원 상호 협력
4. 독거세대 고독사(자살) 예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
5.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
6. 기타 입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양 기관이 협의한 사항

제3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양해각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4조(기밀유지)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보, 자료 및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유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발효, 유효기간, 종료) 본 업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
다만, 협약 종료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당사자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본 협약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,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고,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3월 9일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
관장 조 재 관

주택관리공단 구산주공아파트1단지관리소
소장 구 명 수